성주군도로무단점용부지에대한과태료부과·
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0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관한 위임법령인 「도로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 및 관련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「도로법 시행령」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(안 제3조제1항) : 20만원 이하
→ 150만원 이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법 시행령」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입법예고 : 2015. 8. 20 ~ 2015. 9. 9 (의견없음)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 : 2015. 7. 28 ~ 2015. 8. 7 (해당없음)
마. 규제심사 : 2015. 7. 28 ~ 2015. 8. 12 (원안동의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도로무단점용부지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도로무단점용부지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성주군도로무단점용부지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”를 “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”로 한다.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2항”으로 한다.
제2조제1항 전단 중 “도로법”을 “「도로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도로법”을 “「도로법」”으로,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20만원”을 “15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13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과태료의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성주군도로무단점용부지에대한과태료부과・징수조례	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・징수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2항 ----------.
제2조(용어의정의)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.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	제2조(용어의정의) ① ----------「도로법」 ----------. ----------「도로법」 ----------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-----.
제3조(과태료)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・징수할 수 있다.	제3조(과태료) ① ----------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-----150만원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・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③ ----------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3항 ----------.